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연월일	2009. 03.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위 법령이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정보공개 및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1조).

나.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청구할 경우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의 중복내용을 정비하고, 자동차에 관한 수수료 징수사무 폐지에 따라 필요없는 징수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다.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이루도록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

○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의 조정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감면대상에 포함
- 장애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위 법령 인용 용어의 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함

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따로 정하고 그 감면비율을 조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현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2종의 정보공개 청구건을 상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3종으로 따로 정하고,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하향조정함

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1).

-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사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수료 항목 신설
 - 비료생산업 등록 : 1건당 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 1건당 1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 폐지
 -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실적증명(공사·제조)

바. 상위 법령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이루도록 정보공개 대상과 수수료를 조정함(안 별표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표]의 수수료 항목 및 금액과 일치시킴

사. 별표의 제목과 관련 조항 및 서식 등을 정비함(안 별표1, 별표2,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경제과(상공담당, '09.1.12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1. 23. ~ 2009. 2.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발급신청서”를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으로, “하드로써”를 “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구술신청”을 “구두

신청 등”으로, “곤란할 때”를 “곤란할 경우”로, “하므로써”를 “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를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제증명”을 “제증명 등”으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중전의 별표 1-1), 별표 3(중전의 별표 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 공개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 ----- -----.</p>	<p>제2조(적용) 제증명과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p>
<p>제3조(요율) ① <u>수수료를 징수할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삭제 2000. 11.15></p> <p>③ <u>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u></p>	<p>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p> <p>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p>	<p>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p>
<p>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② <삭제 2000. 11.15></p> <p>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p>	<p>제5조(징수방법) ① ----- -----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 함으로써 ----- ----- 구두신청 등----- --- 곤란할 경우 ----- ----- 함으로써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 -----.</p>

현행	개정안
<p>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u>아니한다</u>.</p>	<p>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 ----- ----- <u>않는다</u>.</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u>아니한다</u>.</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p> <p>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때</p> <p>4.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 공개를 청구한 때</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u>않는다</u>.</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p> <p>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p>

현행	개정안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6.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7. 「고엽제후휴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8. 「광주민중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9.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 ----- <u>않는 제증명 등</u>----- <u>별표 3</u>-----.</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③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u> 2. <u>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u> 3. <u>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u>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u>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u>					[별표 1] <u>제증명 등 수수료</u> <u>(제3조 관련)</u>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5. 회계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			<삭 제>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1,000			(1)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1,0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			(2)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		
(4) 실적증명(공사·제조)	1통	1,000			<삭 제>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			(3)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		
12. 농·수·축산등에 관한 사항					12. 농·수·축산등에 관한 사항				
(1) ~ (4) (생 략)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신 설>					(6) 비료수입업 등록	1건	10,000		
[별표 1-1] <u>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u>					[별표 2] <u>정보공개 수수료</u> <u>(제3조 관련)</u>				
[별표 2]					[별표 3] <u>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u> <u>(제7조제2항 관련)</u>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신상에 관한 사항			
(1) 이장재직 사실 확인	1 통	800	
(2) 호(제)적부 멸실 확인	1 통	1,000	
(3) 재직(퇴직, 경력) 증명	1 통	1,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식품, 공중위생)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 통	1,000	
(2)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 통	1,000	
(3) 조립 실적확인	1 통	1,000	
(4)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1 통	1,000	
(5) 자동차미소유 사실확인	1 통	1,000	
(6) 피해사실확인서	1 통	1,000	
3. 부동산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확인 ※ 동일필지 공시일자별 추가	1 필지	800 200	
(2) 개별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주택	800 200	
(3) 공동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 주택	800 200	
(4)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 인	1 건	30,000	
(나) 개 인	1 건	20,000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가) 법 인	1 건	5,000	
(나) 개 인	1 건	3,000	
(6) 분사무소 설치신고	1 건	2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 통	800	
(2) 지방세 납세증명	1 통	800	
5. 회계에 관한 사항			
(1)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 통	1,000	
(2) 원천징수 공제증명	1 통	1,000	
(3) 보상금 지불증명	1 통	1,000	
6.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 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1 건	3,000	
7.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	1 건	1,000	
(2) 입지기준 확인신청	1 건	31,0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 건	20,000	
(4)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1 건	20,000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 건	20,000	
(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1 건	20,000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록	1 건	20,000	
(8)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 신청	1 건	100,000	
(9)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 건	51,000	
(10)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 건	24,000	
(1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1 건	24,000	
(12)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 건	5,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문화·관광등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영업허가			
(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 건	40,000	
(나)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 건	20,000	
(다)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 건	20,000	
(라)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 건	10,000	
(2)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1 건	10,000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 등록, 신고)	1 건	20,000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등록, 신고)	1 건	10,000	
(5) 체육시설업 신고	1 건	30,000	
(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 건	10,000	
(7)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1 건	31,000	
9. 환경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 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1 건	5,000	
10. 건설등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 건	5,000	
(2) 건설기계 저당(말소)등록	1 건	1,000	
(3)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점용, 사용)허가	1 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소하천점사용기간 연장신청	1 건	1,300	
(5)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1 건	5,000	
(6)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 건	5,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1.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1) 철거사실 증명	1 통	800	
(2) 공(시)영주택분양금납부 증명	1 통	800	
(3) 표준주택 설계도면	1 호	1,500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 건	600	
(5)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1 건	1,000	
(6)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800	
(7)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8)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	
(9)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10) 체비지 분할 신청	1 건	1,000	
(11) 토지대금 완납증명	1 건	1,000	
(12)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 건	1,000	
(13)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 건	1,000	
(14) 토지사용(체비지) 승락	1 건	1,000	
(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1필지 “	1,000 1,500	
12. 농수축산등에 관한 사항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 건	800	
(2) 내수면어업 허가 및 면허신청	1 건	10,000	
(3)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	1 건	5,000	
(4) 유해어업 사용허가	1 건	5,000	
(5) 비료생산업 등록	1 건	30,000	
(6) 비료수입업 신고	1 건	1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3.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관련 신고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 건	100,000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 건	40,000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 건	40,0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 건	20,000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 건	5,000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가) 치과기공소 인정	1 건	20,000	
(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 건	10,000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 건	8,000	
(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 건	8,000	
(4) 위생관련 영업신고			
(가) 위생처리업 신고	1 건	22,000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 건	12,000	
(다) 세척제제조업 신고	1 건	29,000	
(라)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 건	17,000	
(마)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신고	1 건	14,000	
(바)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 건	5,000	
14.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사신청	1 건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 건	2,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방서 교부 (가) 신 규 (나) 갱 신	1 건 1 건	4,000 2,000	
(4) 급수공사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2,000 4,000 설계금액의 100분의1	
(5) 시공자재 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6) 준공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000 2,000	
(8) 정수처분 해제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15. 그 밖의 공부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건	500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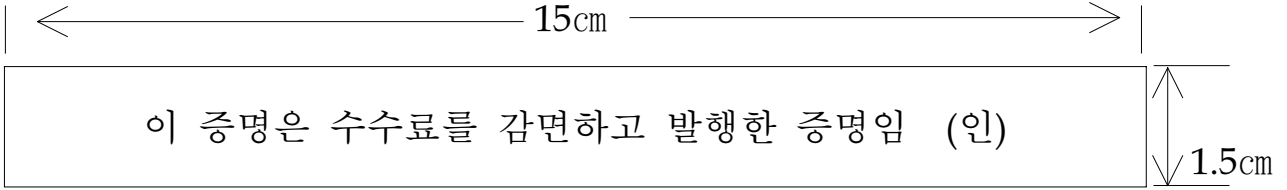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도면·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영 화 필름	○시 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 라 이드	○시 청 -1컷마다 200원	○복 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 청 -1컷마다 200원	
마 이 크 로 필름	○열 랍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 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 진·사 진 필름	○열 랍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 랍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 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비료관리법」

[시행 2003. 6.20] [법률 제6865호, 2003. 3.19, 일부개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개정 1999.3.31>)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② 삭제 <19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9.3.31>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시행 2008. 8. 4] [법률 제8591호, 2007. 8. 3, 일부개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개정 1999.3.31>)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007.8.3>

② 삭제 <19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3.31>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7.8.3>

부칙(제8591호, 2007. 8. 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도지사에게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10. 4, 타법개정]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개정 1999.3.31>)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시행 2008. 8. 4] [법률 제8591호, 2007. 8. 3, 일부개정]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개정 1999.3.31>)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1.1]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12.31, 타법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2.9.18>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및등록번호																		
공사 내역																							
⑤공사명							⑦총공사금액				백만원												
⑥현장소재지 (번지까지 기재)																							
⑧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인·허가기관																
							⑨ 인·허가연월일																
⑩ 계약 연월	⑪ 착공 연월	⑫ 준공 (예정) 연월	⑬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⑮당년도기성액				⑰당년도기성지급액												
			⑭총 계약 금액				⑯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⑱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조	천	백	십	억	천	백
⑲기타(공사의 규모·공 법·공동 등)			규모·공 도급내역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상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 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수 수 료 (제7조관련)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 램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 램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 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 램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 램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 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 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 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 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 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 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 화 필름	○시 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 라 이 드	○시 청 -1컷마다 200원	○복 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 청 -1컷마다 200원	
마 이 크 로 필름	○열 램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 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 진·사 진 필름	○열 램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 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 11. (생략)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